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803호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4 호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5 호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3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6 호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1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7 호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3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8 호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41
○ 의회사무국공고 제 3 9 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50

고 시

○ 고 시 제 7 8 호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총 무 과	59
---------------	---------------------	-------	----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34호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자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인 추진 필요

2. 주요 내용

- 공모사업, 담당부서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사항 (안 제3조)
-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와 추진방법 (안 제4조~제5조)
- 공모사업 의회보고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공모사업 관련 표창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6. 30. ~ 7.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유광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06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 의 자 : 유광희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인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공모사업, 담당부서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사항 (안 제3조)
-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와 추진방법 (안 제4조~제5조)
- 공모사업 의회보고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공모사업 관련 표창 규정을 정함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동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시 사업과의 연계성
 -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협의

4. 재정협의

가. 국·시·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관련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남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가. 외부전문기관 수행 용역비

-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표창장제작비

-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7조(표창)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전문기관 수행 용역비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표창장제작비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외부전문기관 수행 용역비 : 기술적 추계 곤란

참고) 인천 중구 :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 조례가 있으나 별도 예산 미편성

나. 표창장제작비 : 예상 소요비용 5천만원 미만

참고) 연간 약 125천원 소요(25천원(액자형) * 5건)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남 기 동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35호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지역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차량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안 제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6. 30. ~ 7.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승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07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 의 자 : 정승환 의원

찬 성 자 : 전용호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지역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차량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안 제4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지역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비군”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훈련장”이란 제17사단 제507여단 제47대대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지역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남동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규정에 따른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시 재정 소요 예상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1) 남동구 지역예비군의 남동구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 2)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지역예비군훈련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제하며, 일평균 훈련참가자 수는 300명으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방법) 1일 필요한 차량 × 훈련 일수 × 차량 1대당 임차비용

◦ (결과)

- 1차년도 : 7대(≒300명/45인승) × 27일 × 400,000원 = 75,600천원
- 2차년도 : 7대(≒300명/45인승) × 27일 × 420,000원 = 79,380천원
- 3차년도 : 7대(≒300명/45인승) × 27일 × 440,000원 = 83,160천원

※남동구예비군훈련장 2027년 부대 이전(부평) 훈련대 창설 예정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4. 부대의견**

물가상승에 따라 차량임차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 정책기획국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차량 임차비용		75,600	79,380	83,160			238,14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75,600	79,380	83,160		238,140
	지방세		75,600	79,380	83,160		238,14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6. 11. 30.>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 나. 사무실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 가. 사무·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 나. 사무실 집기·비품의 지원
 -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
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유지의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
 - 나. 전투시설의 지원
 -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36호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안 제7조)
- 점자의 보급과 지원(안 제8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 및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9조 ~ 제10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6. 30. ~ 7.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08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 의 자 : 유광희·이정순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제6조)
-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안 제7조)
- 점자의 보급과 지원(안 제8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 및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9조 ~ 제10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점자법」 제3조~제5조, 제7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 「점자법 시행령」 제4조
-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 「도서관법」 제4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 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구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구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따라 추진하는 점자의 보급, 점자문화의 확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에 점자의 보급, 점자문화의 확산,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 등이 현재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아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참고자료]

□ 점자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왜곡·첨가·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점자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점자규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점자 사용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점역·교정사
2.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3. 점자물제본기
4. 그 밖에 점자출판에 필요한 설비 및 소프트웨어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점자법 시행령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9., 2022. 12. 6.>

1. 「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인천광역시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천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생략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3. 시각장애인 (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37호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청년 문화예술사업(안 제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6. 30. ~ 7.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정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09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 의 자 : 박정하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청년 문화예술사업(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4조, 제1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남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4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문화예술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 및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 등이 현재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아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참고자료]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정책 사업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
-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38호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내 숨어있는 인적·물적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자생력을 갖춘 남동구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안 제5조)
- 지원 사업(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6. 30. ~ 7.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810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 의 자 : 박정하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내 숨어있는 인적·물적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자생력을 갖춘 남동구 관광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안 제5조)
- 지원 사업(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참고자료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남동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및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의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6조(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따라 공정관광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각종 시책 및 지원사업 등이 현재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아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행정국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참고자료]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조례를 위반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2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해당 지역의 범위, 조치사항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3-39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6. 3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우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 기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관련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안 제4조제1항제5호)
- 자금지원 우대 의무에 관한 실질적 이행사항 규정 : (안 제5조)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3. 6. 30. ~ 7. 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11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 의 자 : 반미선·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우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 기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관련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안 제4조제1항제5호)
- 자금지원 우대 의무에 관한 실질적 이행사항 규정 : (안 제5조)
- 그 밖에 조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분야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 -----
제4조(지원활동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4조(지원활동 등)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분야</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	제5조(자금지원 우대)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우

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
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
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
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
사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중
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및 구매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4조(지원활동 등), 제5조(자금지원 우대) 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직접적인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 진행 시, 여성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여성기업을 우대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김 종 화

[참고자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3. 29.>

[전문개정 2009. 12. 30.]

제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 10. 19.]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78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23. 6. 30.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문서 참조”

2023. 6. 30.

남 동 구 청 장

[첨부]

-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위한 -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계획

- ❖ 6.29. 시행되는 구월2동-간석2동 경계 조정 및 구월2동 다복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통·반 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8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2(통·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2023.6.29.)

-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2023.6.29.)

2

조정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통·반 확정 기준 적용
 - 반 :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통 : 2~8개 반으로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 가능

3

조정사유

- 간석2동의 일부 행정구역이 구월2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구역에 맞는 통·반 조정
 - 간석동 141의28-30, 142-146번지 및 간석동 131의2 일부(도로), 141의1 일부(도로), 141의2 일부(도로)를 구월동으로 편입
- 구월2동 신규입주 예정인 공동주택(한화포레나인천구월아파트) 통·반 구역 정비

4

조정내역

- 총괄내역 : 1개통 6개반 감소

구 분	조 정 전		증 감		조 정 후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887	3,785	△1	△6	886	3,779
구월2동	49	211	△1	△5	48	206
간석2동	35	155	-	△1	35	154

○ 조정 상세내역

- 【 간석2동 】

통명	조 정 사 유		조정결과
간석2동 17통4반	○ 동경계 조정		
	변 경 전	변 경 후	
	간석2동	구월2동	
간석2동 17통	○ 17통 4반 구월2동 편입 후		17통 4반 폐지
	변 경 전	변 경 후	
	17통→4개반(227세대)	17통→3개반(192세대)	

- 【 구월2동 】

통명	조 정 사 유		비고		
간석2동 17통4반	○ 동경계 조정		17통 4반 세대 구월2동 편입		
	변 경 전	변 경 후			
	간석2동	구월2동			
구월2동 20통	○ 간석2동 편입구역 및 기존 47통 구역 일부 편입		※공동주택 입주 후 세대 수 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20통→3개반(0세대)	20통→3개반(379세대)			
구월2동 21통	○ 기존 22통 및 47통 구역 일부 편입			※공동주택 입주 후 세대 수 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21통→5개반(0세대)	21통→3개반(334세대)			
구월2동 22통	○ 기존 21통 및 47통 구역 일부 편입				※공동주택 입주 후 세대 수 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22통→3개반(4세대)	22통→3개반(370세대)			
구월2동 47통	○ 48통이 47통으로 명칭 변경		48통➡47통		
	변 경 전	변 경 후			
	47통→3개반(8세대)	48통→2개반(144세대)			
구월2동 48통	○ 49통이 48통으로 명칭 변경		49통➡48통		
	변 경 전	변 경 후			
	48통→2개반(144세대)	48통→3개반(161세대)			
구월2동 49통	○ 49통 폐지				
	변 경 전	변 경 후			
	49통→3개반(161세대)	폐지			

5

행정사항

- 총무과
 - 통·반 조정 결과 고시 : 2023. 6. 30. 한
 - 통·반 조정 결과 市 통보 : 2023. 6. 30. 한
- 홍보실
 - 결정 고시문 게시
- 구월2동
 - 주민 전산 및 통·반 구역 변경사항 반영
 - 통장 위촉 및 주민 안내 실시
 - 주민 전산 변경작업 : 2023. 6. 30. (금) 업무종료 후 실시 예정. 끝

통·반구역조정현황

▷ 승인 일자 : 2023. 6. 30.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887	3,785	-1	-6	886	3,779	
구월1동	51	200	0	0	51	200	
구월2동	49	211	-1	-5	48	206	
구월3동	62	220	0	0	62	220	
구월4동	36	171	0	0	36	171	
간석1동	42	194	0	0	42	194	
간석2동	35	155	0	-1	35	154	
간석3동	54	217	0	0	54	217	
간석4동	46	215	0	0	46	215	
만수1동	44	176	0	0	44	176	
만수2동	42	157	0	0	42	157	
만수3동	39	132	0	0	39	132	
만수4동	43	211	0	0	43	211	
만수5동	33	184	0	0	33	184	
만수6동	41	185	0	0	41	185	
장수서창동	32	121	0	0	32	121	
서창2동	53	183	0	0	53	183	
남촌도림동	44	193	0	0	44	193	
논현1동	46	248	0	0	46	248	
논현2동	49	221	0	0	49	221	
논현고잔동	46	191	0	0	46	191	

